

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712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71211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단554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권

변론종결 2023. 3. 22.

판결선고 2023. 4. 2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단5546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05,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72,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6.경부터 2021. 1. 19.경까지 C과 금전거래를 하여 291,833,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C은 무자력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20. 6.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피보존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2022. 5. 10.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가합10338호), 위 판결이 2023. 1.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1742호).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경, 판사 남수진, 판사 이미주

별지